

하천관리와 국가배상책임

Conservation of Rivers and National Reimbursement Responsibility

김동복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Kim Dong-Bok

Nambu Univ.

요약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검토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re are the road of the artificial government property and rivers of the natural government property in representative Public Facilities applied National Reimbursement Law. Art.5. Doctrine on Responsibility of Public Facilities.

Recently damage of a people has frequently been occurring caused by the flood of rivers and the flood disaster, and a people tends to request national reimbursement regarded it not as a natural disaster but as a man-made disaster.

Especially the flood repeatedly occurred by the flood of rivers and destructive of the embankment of rivers, and it is also occurring in repairing rivers.

Therefore a nation have to tak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of defect of conservation of rivers, and pay attention to improving the facilities of conservation and at the same time expand the range of responsibility.

Thus the range of this study limits the national reimbursement of conservation of rivers among National Reimbursement Law. Art.5. Compensation for Damages on Defect about a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Within this range, the objection of this study is to seek controversial issues and solutions, which belong with national reimbursement responsibility about conservation of rivers, as every principle of law and precedent coming under natural government property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defect of conservation of rivers is analyzed and examined.

I. 서론

국가배상법에는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진다.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검토해보고, 더 나아가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로 한다.

II. 국가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공공영조물

1.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첫째,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에 있어서, 둘째, 그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셋째,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해야 한다.

2.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Anstalt)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인 공물을 의미한다. 유체물에는 개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공공시설도 포함한다. 또한 부동산·동산(소방자동차·항공기 등), 인공공물(도로·항만·상하수도·공공청사·공공립학교교사·교량·병원 등)·자연공물(하천·호소·해빈 등) 타유공물·동물(군견·경찰견 등)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민법 제758조의 대상인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하천, 항만, 해안, 소호 등의 자연공물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소극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민법 제758조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인위적인 공작물에 관한 규정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연공물은 포함되지 않고 하천의 제방과 같이 인공으로 부가된 시설이 있으면 이를 공공의 영조물로 본다[1].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단 국유·공유재산일지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 아닌 국유·공유의 사물은 영조물이 아니다. 예컨대 산림과 같은 잠종재산은 영조물이 아니므로 그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8조 참조).

3. 판례의 검토

판례는 맨홀, 망원유수지의 수문상자, 배수펌프장 방책시설[3], 저수지[4], 제방도로[5] 등을 배상원인이 되는 영조물로 보았다.

III.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검토

1. 하천의 자연공물성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하천법 제2조 제1항 1호).

하천은 원칙상 자연공물이다. 그러나, 하천 중 축조된 제방, 수문은 인공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한도내에서는 하천도 인공공물의 성질을 갖고 인공적인 시설의 하자는 인공공물에서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2. 하천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기준

일본의 판례는 하천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관하여 ‘하천 관리의 하자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그 밖의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의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제약하에서 동종·동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6]’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일용 우리나라에도 타당하며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하천관리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정적, 사회적 및 기술적인 제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7].

3. 계획고수량과 하천의 하자

계획고수량이란 홍수시 하천의 제방이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된 최대유량이다. 하천에 제방이 축조될 때에는 계획고수량을 정하게 되는데, 현행 하천법은 ‘하천유지유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하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계획고수량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계획고수량이 특히 파제로 인한 수해시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즉 홍수가 계획고수량 이하였음에도 제방이 파손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면, 예견가능성을 넘는 장기간의 홍수로 계획고수량이하로 하천의 유량이 유지되었지만 장기간 하천이 고수위로 유지되어 제방으로 물이 스며들으로써 하천

이 약하게 되어 파손한 경우 또는 제방의 기초지반에 난수성층의 불연속 등 특이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8].

4. 예산의 절약과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하천의 관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하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5. 개수중인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개수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근거하여 현재 개수중인 하천에 대하여는 당해 계획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당해 하천의 미개수분에서의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당초의 계획상의 개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기에 개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개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천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9].

IV. 수재피해로 인한 판례검토 및 하천관리의 문제와 제안

1. 수재피해로 인한 국가배상사례와 평가

1.1 국가배상을 부인한 사례

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소위 1998년 8월 중랑천변의 공릉1, 3동 수해지역피해사건: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1) 홍수조절에 관한 다목적댐 설치상 하자의 인정 기준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 그 유역의 강우상황, 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

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시간 경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에 관한 댐 관리상의 하자의 인정 기준

댐이 건설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2)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011 판결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제방과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래더미 위에서 놀던 5세 남짓한 어린이가 모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제방 및 하천부지의 관리자인 시에게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31662 판결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

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부산시로서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4)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5594 판결

중랑천 하류에 설치된 하수취수보 주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평소 인근 주민들이 익사 등의 위험성이 있는 하수취수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된 철제울타리의 문이 피고시의 관리소홀로 열려진 채 방치되어 있자, 그 문을 통하여 하수취수보 위로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아래 하천에 빠져,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및 위 하수취수보는 서울특별시장이 중랑천의 유지, 보수 의무자로서 중랑천의 유속조절과 세굴방지, 하수집수 등을 위하여 1978년경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는 하천부속물인 사실을 확정함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중랑천의 하천부속물인 위 하수취수보와 그 부속시설인 위 철제울타리의 관리자인 피고시의 공공영조물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1.3 판례에 대한 종합평가

문제의 핵심은 하천에 관하여 순수한 자연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제방의 범람으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인위적인 시설물이 부가되지 않은 자연공물에 대하여 과연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주류적 경향은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홍수조절에 관한 다목적댐 설치상 하자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제방 범람으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는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다.

상기 국가배상인정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제방위에 도로가 설치된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제방유실과 관련한 사망사고, 또한 태종대의 유원지나 중랑천 하수취수보의 안전시설 미비와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영조물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바야흐로 하천수해를 천재로 알고 체념하던 국민이 그것을 인재로 인식하게 되는 등 사고의 변화는 하천관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요구된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인식의 향상은 공공의 영조물책임을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주체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의무와 더불어 하천에 관한 충분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제방범람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천관리소홀로 인한 영조물책임범위가 넓어지고 전향적인 판례가 짐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2. 하천관리상의 문제와 제언

하천이란 유수, 하천구역 및 하천부속물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 종합체이다[10]. 관리대상으로서 하천은 현재 위험물일 뿐만 아니라 이용가치가 있는 유용한 존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개개 하천의 집합체로서 수계로 파악하고 있다[11]. 하천에 관해서는 하천법을 비롯하여 소하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하천의 물이 다양한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고 하천관리가 순환하는 물 전체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하천관리도 물의 종합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유역단위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하천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포함한 유역단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하천 및 유역은 각각 독자적 자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있어서는 유역의 지방자치단체 내지 주민이 관여하는 방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1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과 관련된 하천관리에는 재해관리, 수량관리 및 수질관리가 문제되는 바, 주로 재해관리와 수량관리가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치수 등 재해관리는 행정자치부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하천정비법, 건설교통부가 하천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농림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환경부가 하수도법, 기상청은 기상업무법에 따라 행하고 있다.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가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를 및 지하수법, 행정자치부가 소하천정비법 및 온천법, 농림부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환경부가 수도법, 산업자원부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재해관리와 수량관리를 중심으로 하천관리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부처별 분산관리체계는 연계관리 내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분산된 조직체계로는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량관리면에서도 안정된 수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이용·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구역별로 분할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를 유역단위 관리조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유역별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유역단위의 총괄·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하천관리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사무배분이 필요하고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즉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사무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천관리법제에 주민참가를 더욱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주민참가의 방법으로는 주민투표, 직접청구, 동의권 부여, 의견제출·청취, 공청회, 사전설명회, 위원회, 협의회, 협정 등을 들 수 있지만, 그 구체적 선택이나 형성은 당해 하천관리의 성질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13].

V. 맺는 말

현대국가는 질서유지차원을 넘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국가의 공공시설물을 널리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를 떠맡고 있으며 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최근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않았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고에서는 자연공물 즉 하천에 관련된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책임을 논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제방 범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다.

다만, 제방위에 도로가 설치된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제방 유실과 관련한 사망사고, 또한 태풍대의 유원지나 중랑천 하수 취수보의 안전시설 미비와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영조물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바야흐로 하천수해를 천재로 알고 체념하던 국민이 그것을 인재로 인식하게 되는 등 사고의 변화는 하천관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요구된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은 공공의 영조물책임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의무와 더불어 하천에 관한 충분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제방범람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재정부담이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까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무한정하게 확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서 국민의 안전배려의무와 재정부담이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조화선상에서 하천관리소홀로 인한 영조물책임범위의 영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례가 집적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 [1]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소고, 고시계(1975, 10), p.48; 최근 김동희교수도 자연공물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p.506, 2005
- [2]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5, p.459;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5, p.527; 석중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p.64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p.584, 2005
- [3]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나46412 판결.
-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 22050 판결.
- [5]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 [6] 大東水害訴訟 差 審上告審判決, 平成 2. 6. 22, 判例集不登載
- [7] 宇賀克也, 國家補償法, 有斐閣, p.287, 1997
- [8] 김창조, 日本長良川 安八水害賠償訴訟, 行政判例研究 3, p.249 이하 참조.
- [9] 大東水害訴訟最高裁判所判決, 昭河59. 1. 26. 民集38·2·53.
- [10] 三本木健治, 河川の管理, 現代行政法大系9, 有斐閣, p.382., 1984
- [11] 조태제, 하천관리조직의 제도적 정비방안, 환경법연구, p.33, 2003.
- [12] 조태제, 위의 논문, p.38.
- [13] 大久保規子, 市民參加と環境法, 大塚直北村喜宣 編, 環境法學の挑戰, p.95, 2002.3.